

○ 주요골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 15인
- 선임방법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1조
- 지방재정법 제41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목 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1년도 결산 및 91년도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위 원 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5인으로 한다.
3. 선임방법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19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992. 11. 26.
충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2. 11. 20.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2. 11. 20.
 - 다. 상정일자 : 제13회 정기회 제1차위원회(92.11.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영목 재무과장)
 - 가. 제안이유
재산취득 및 매각에 대한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취득 : 연남동 365-11 박창열의 매도 포기로 연남동 370-6 김덕호로 변경 취득.

○ 매각 : 신수동 445-24, 현석동 106-9, 신수동 445-26, 현석동 106-11, 신공덕동 145-16을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변경.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현기)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연남동 370-6 김덕호 소유물건은 연남동 제2노인정으로 사용키 위한 재산취득으로 비용은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지난 9월 22일 제11회 임시회시 연남동 365-11 소재 물건을 취득하도록 승인 한바 있음. 그러나 소유권자 박창열씨의 매도의사 철회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신수동 445-24소재 물건동 매각 5건은 점유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서, 동매각건은 현지확인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후 매각결정이 이루어져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입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신수동 445-5 현대아파트와 현석동 114-1 원화출판사 사이의 소방도로 중 가각이 급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주민이 원하는 내용대로 가각정리를 하여, 빠른시일내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

6. 소수의견의 요지 : 매각건중 신수동 및 현